

##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

의안 번호	2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0. 17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02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(2003년 ~2006년)를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

- 핵심사업(성인암관리사업, 방문보건 뇌혈관질환예방 및 관리사업) 추진
- 직원의 전문교육 강화
- 노인·의료·복지의 연계를 통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

나. 지역현황과 전망

- 지역사회 진단 실시 : 각종 기초 통계자료 수집분석, 설문조사 실시
  - ▷ 지역사회진단 결과 분석에 따른 추후전망 : 보건의료수요측면, 공급측면

다.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

- 핵심사업 : 성인암관리사업, 방문보건 뇌혈관질환예방 및 관리사업
- 일반사업 :
  -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: 영유아보건사업, 학생보건사업, 모성보건사업, 노인보건사업
  - 서비스별 보건사업 :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, 영양개선사업, 구강보건사업, 만성전염병관리사업, 정신보건사업,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

라.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

- 진료위주의 의료기관체계를 예방위주의 체계로 정비
- 전문인력확보
- 보건의료장비 보강

마.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

- 공공기관과의 추진계획
  - 고신대학과 노인건강관리 지침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
  - 국민건강보험공단, 가족보건복지협회, 사회복지관과 암검진 협조
  -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동검진 실시
- 민간의료기관과의 추진계획
  - 의사회, 한의사회, 약사회, 영양사회등의 보건사업 참여유도
  - 무료선청성대사이상검사, 정신질환자관리, 결핵환자관리등  
전문 민간의료기관과 연계치료 : 동산병원등 12개병원

3. 관계법령

-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